

#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고찰

## *The Child Case Management System in New Zealand*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 서언

최근의 복지의 이슈는 보다 개별화되고 맞춤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소득지원과 현물제공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이제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복지제공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자원을 잘 매칭시켜주는 것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란 개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들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sup>1)</sup> 사례관리가 제대로 수행될 때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 해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사례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대한 밀착된 관리

를 통해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사례관리는 공공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등 민간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아동은 사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동문제는 심각해지고, 복지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아동은 가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족복지는 곧 아동의 복지와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 사례관리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족의 참여’를 허용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본 고에서는 아동사례관리 사례로서 가족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1) 석재은(2000),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보건복지포럼, 48.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는 아동사례관리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Family Group Conference (FGC)를 도입한 국가이다. 즉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가족의 의사 및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사결정모델로 불리는 이 개입 방법은 뉴질랜드 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 일부지역 등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sup>2)</sup>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40여년간 활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아동사례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뉴질랜드의 특성과 아동복지 관련 부처를 살펴본 후, 아동사례관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든 차원에서 고려되는 Family Group Conference (FGC)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 2. 뉴질랜드 특성 및 아동사례 관리 관련 부처

### 1) 뉴질랜드 소개

뉴질랜드는 국토면적 268,130km<sup>2</sup>로 한국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총 인구는 우리나라

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30만명에 불과하다. 국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도, 앵글로색슨 (Anglo-Saxon)위주의 백인 67.6%, 마오리 (Maori) 원주민 14.6%, 아시아계 9.2%, 폴리네시아계 6.9%, 기타 1.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민 1인당 GDP는 2009년 기준으로 \$27,259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 육아, 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급여로 실업수당, 구직보조금, 청소년수당, 가족보조금, 한부모 및 독신자 수당, 병가수당, 환자수당 등이 있으며, 조세방식의 독특한 연금제도<sup>3)</sup>를 시행하고 있다.

내각을 중심으로 3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2개 독립행정기관, 14개 공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조직으로는 내각 사무처, 공공관리위원회, 재무부, 문화유산부, 환경부, 건설주택부, 과학기술·연구부, 마오리 개발부, 관세청, 농림부, 경제개발부, 보건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환태평양지역부, 여성부, 국세청, 교육부, 수산부, 외교통산부, 교통부, 자연보호부, 교정부, 국방부, 국가정보국, 국립도서관, 특수사기 조사청, 통계청 등이 있다.

2) 정은주(2008).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7, pp.7~35.

3) 뉴질랜드는 소득세 등 통상조세에 퇴직세 명목으로 세율을 부과 징수하여 연금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2) 뉴질랜드의 아동복지 담당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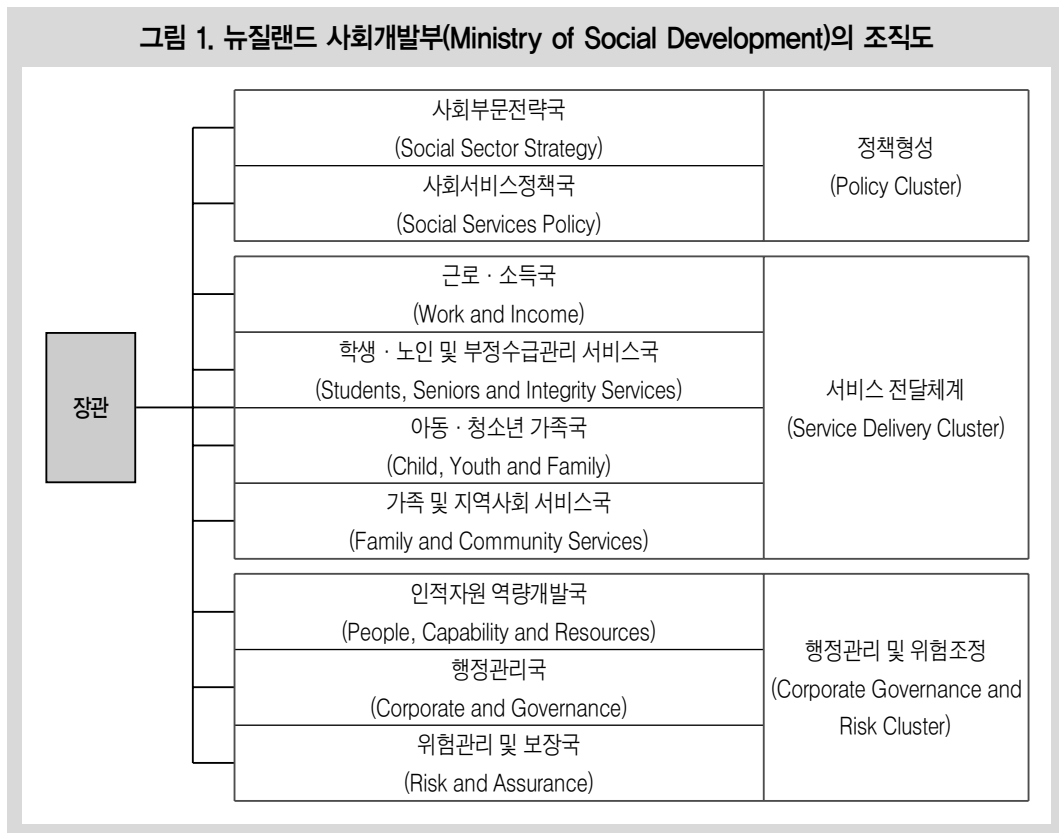
뉴질랜드에서 아동 및 가족 업무는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사회개발부는 사회정책과 국민의 소득, 고용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개발부 내의 조직은 정책국, 사회서비스국, 행정관리 및 위험조정국 등 3개의 군(Clus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개발부의 주요업무는 소득 및 고용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업무, 지역사회 서비스, 학생수당을 통한 학자금 대출, 빈곤가정 지원 서비스 및 각

종 프로그램 수행, 은퇴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공 등이다.

2009년도에는 약 540,000명의 노년층에게 퇴직연금 지원, 고용 또는 건강상태, 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약 345,000명에게 재정 지원, 943,000명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카드를 통한 생활비 지원, 198,738명에게 학자금 지원, 82,638명에게 학생수당을 통한 생활비지원을 하였다.

사회개발부 중 아동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은 아동청소년 가족국이다.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해서 예방서비스를 제

그림 1.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조직도



공하고 있고, 'Family Group Conference'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 가족의 강화, 지역 사회 강화를 통해서 각종 아동 및 관련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sup>4)</sup>

### 3) Child, Youth and Family의 주요 기능과 아동사례관리

아동청소년가족국의 비전은 건강한 가정 (strong family)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에서는 철저하게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에 초점(child-centered)을 둔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둔다.
- 가족이 자녀(아동)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 가족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와 근거에 기반해서 (evidence based) 가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계획한다.
- 가족이 아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뉴질랜드에서 가족에 기반한 아동지원을 한 이유는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 마오리족과 같은 인종이 가족중심성을 보이면서 가족내에서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하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한 아동지원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sup>5)</sup>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포용정책을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들과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요소들은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는 1989년 통과된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에 반영되었다. 법에 기반하여 뉴질랜드에서는 아동문제 해결시 반드시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가족국의 주요 업무 처리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 3.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체계

### 1) 아동사례관리 방법<sup>6)</sup>

뉴질랜드 아동청소년가족국 아동사례관리 서비스는 돌봄(care)과 학대아동보호(protec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입의 흐름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아동사례관리의 흐름은 문제상황 접수에서 시작하여 콜센터 초기사정, 현장 초기사정, 안전성 사정 (safety assessment), 경찰의 조사, 사회복지사의 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가족 협의, 가족집단회의, 법원소송, 돌봄의 과정을 거친다.

4) Mike Doolan,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gency, New Zealand, 마이크 두란, 어린이, 청소년 인원 및 그 가족 에이전시, 뉴질랜드(1999년 8월 7일 게시됨).

5) 정은주(2008).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7, pp.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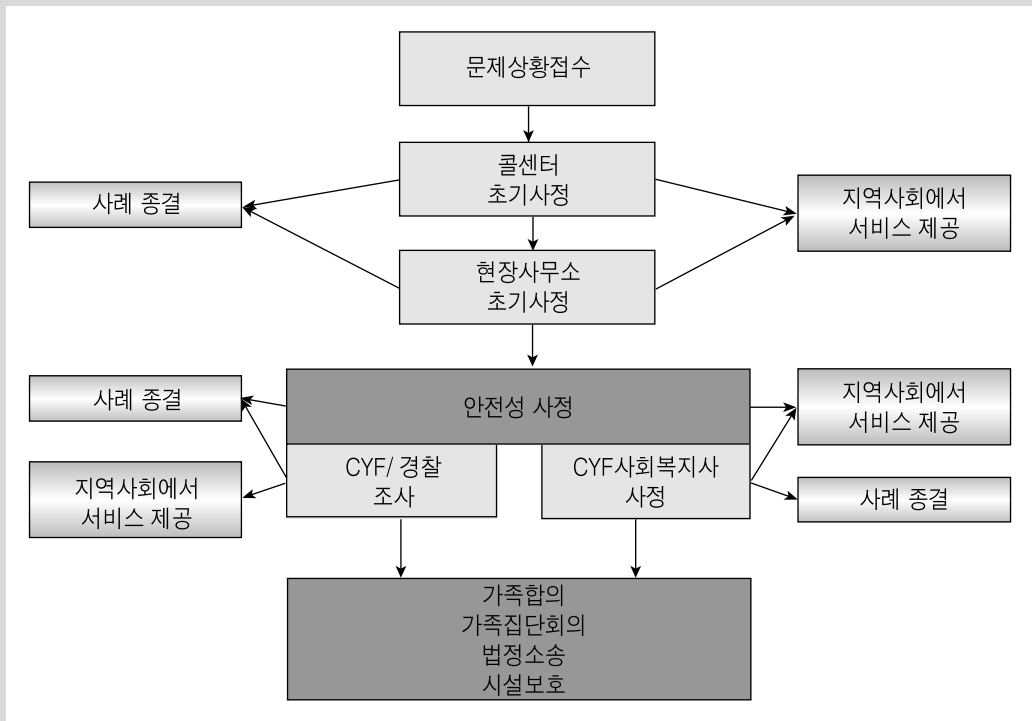
6) 본 절은 뉴질랜드 'Child, Youth and Family'의 내부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음.

표 1. 뉴질랜드 아동청소년가족국의 주요 업무

구분	1일 주요 업무(량)
아동학대 및 방임	230개의 notification을 처리
가족 및 아동의 안전	100개 이상의 가족들을 만남
아동돌봄 및 보호	20개의 care and protection과 40개의 youth justice family group 회의를 진행
비행청소년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돌봄
소외아동	보호자(caregiver) 또는 extended whānau와 함께 사는 아동 5,000명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기관(community organization), 단체(agency),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간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	인식향상 및 신고방법, 도움제공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핵심집단(key group)과 단체(agency) 방문

자료: 뉴질랜드, Child, Youth and Family 내부자료.

그림 2.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흐름도



자료: 뉴질랜드, Child, Youth and Family 내부자료.

사정을 한 뒤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종결을 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이관된다.

#### (1) 문제상황 접수

아동청소년가족국에서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고 받는다.

#### (2) 콜센터 상담 및 초기사정

Child, Youth and Family National Contact Centre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concern report)를 사정하는 기구이다. Contact Centre는 서비스 팀과 접수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팀(The Customer Service Team)은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hild, Youth and Family의 관문(gateway)이다. 1일 평균 3,000통의 전화를 상담한다.

접수팀(The Intake Social Worker Phone and Processing Teams)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1명의 사회복지사와 19명의 사회복지 자원도우미(Social Work Resource Assistant)가 있다. 운영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주 7일 가동된다. 1일 평균 250건의 전화를 처리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위기분석(risk analysis)을 제공하고 공공, 정부부처,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집단과 전문 기관들에게 전문적인 원조도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이외에도 웹이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매일 70건의 의뢰(referral)를 하고 있다. 경찰로부터는 1일 평균

150건의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웹을 통한 입양에 대한 문의를 처리한다.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outbound calling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센터의 사정후 사례가 종결되기도 하거나 지역사회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이관한다.

#### (3) 현장사무소 초기사정

콜센터의 상담은 유선상이나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가족국에서 직접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게 된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이 처한 상황 및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장 검증후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사정 단계로 넘어간다.

#### (4) 안전성 사정 (Safety Assessment)

안전성 사정은 아동청소년가족국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과 CYS 및 경찰에 의한 조사로 나뉜다.

##### ① CYF 사회복지사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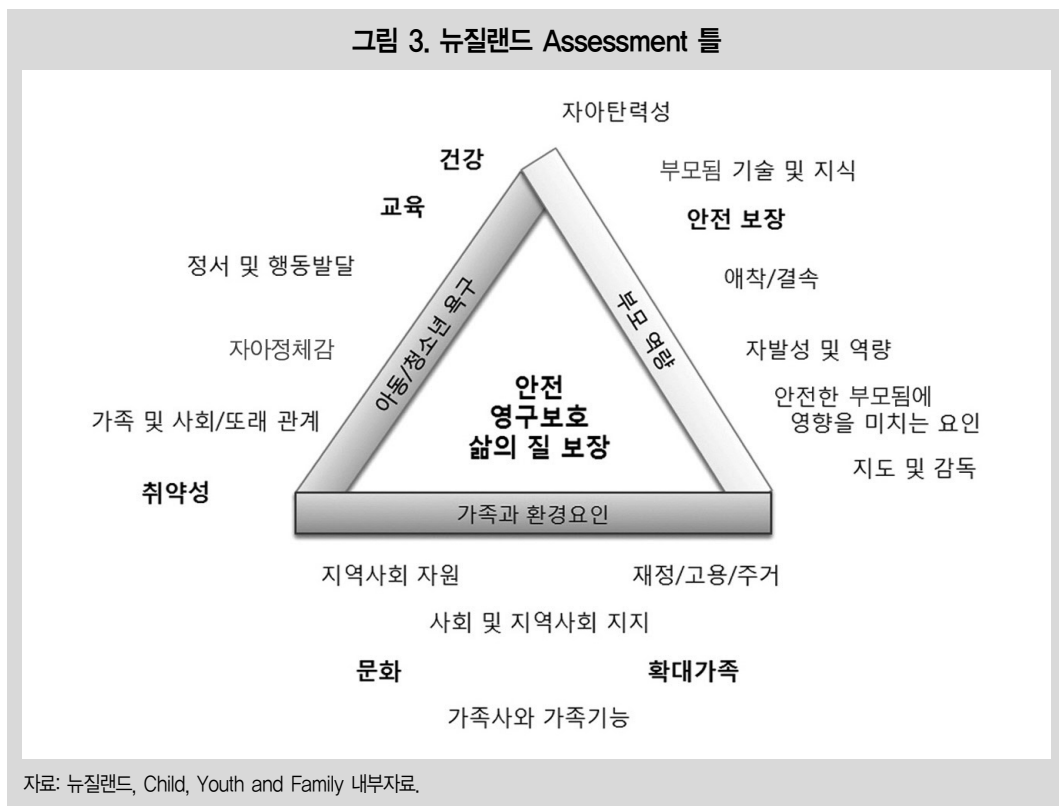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은 가족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아동과

가족 사정에 있어서는 아동과 모든 가족구성원들에 초점을 둔 전면적인 사정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욕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가족과 연계하여 가족이 주도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을 동참시키고 있다.

뉴질랜드의 아동청소년 사정 분석틀(Framework)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사정의 최종 목적은 안전, 영구적 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보장에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부모의 역량,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 가족과 환경요인. 부모 역량에는 자아탄력성(resiliency), 부모됨 기술과 지

식, 안전 보장, 부모자녀 애착, 역량, 안전한 부모됨, 지도감독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 영역에서는 건강, 교육, 정서 및 행동 발달, 자아정체감, 가족과 사회/또래 관계, 취약성 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환경요인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가족재정/고용상태/주거, 사회 및 지역사회의 지지, 문화, 확대가족, 가족력과 가족 기능 등을 고려한다. 이를 종합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사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과 가족을 개입시키고, 가족을 사정에 포함시켜 가족 및 아동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위해 사정틀인 세



가구 모형(The Three Houses)을 활용하여 가족의 문제(Worries), 강점(Strengths)과 미래의 계획(Hopes and dreams)을 진단한다.

## ② CYF 및 경찰조사(investigation)

경찰조사는 상해나 학대의 심각한 사고(예: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방임 또는 심각한 가정폭력)가 있다는 혐의가 발견되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수행된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는 안전조치(safety planning)이다. 초기에는 피해를 밝히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실시된다. 여기서도 가족의 의사결정과 자기결정(engagement)을 중시한다.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관련한 가족의 강점과 욕구를 사정한다.

## (5) 보호

### ① 가족합의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Child, Youth and Family는 서비스 제공자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그들(가족)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 Child, Youth and Family의 집합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아동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나 아동의 복지나 안전에 관해 즉각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가족에게 지역사회내의 지원과 서비스를 연결시킨다.

### ② Family group conference<sup>7)</sup>

Family Group Conference(가족의사결정모델)은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가족을 개입시키는 것으로, 아동보호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족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1989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최초로 시작된 아동복지실천 기법으로,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직접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를 전문적인 사회사업가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지원, 아동보호,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간에 균형을 갖는 것이다. FGC는 사례관리의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다.

- 가족의 협력을 통한 기관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
-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가족과 연계하여 치료 및 보호 서비스 전달. 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향상 및 지역사회의 강화
- 적절한 문화적 서비스의 제공
- 국가 차원의 아동돌봄 수의 감소
- 법정공방의 감소

FGC는 기존의 기법보다 많은 남성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영국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성원이 FGC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흥미로운 점은 FGC에 참여가 가족에게는 전통적인 개입방법에 참여하는 가족보다 자원이나

7) Mike Doolan,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gency, New Zealand, 마이크 두란, 어린이, 청소년 인원 및 그 가족 에이전시, 뉴질랜드(1999년 8월 7일 게시됨).



서비스 등 지원이 적게 지원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가족이 스스로 친인척이 보유한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sup>8)</sup> 가족 밖 외부의 전문가는 가족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 그룹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해서 FGC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46명의 아동돌봄/보호 조정자가 있다. 전국에 12개 CYF 센터를 두고 52개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교육 담당자 등이고 약 2,900명 가량되고 있다.<sup>9)</sup> FGC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방법이다. 이는 가족이 아동의 보호망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조정자의 역할은 가족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FGC는 지역사회를 강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FGC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sup>10)</sup>

- 치료 어린이와 청년층의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기관 개별 잘못된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 재판소송에서의 청년층이 큰폭 감소
- 희생자들을 스스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세스에 참여

- 국가보다 가족 자체가 자신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책임을 지니게 됨.

- 청소년 범죄로 인한 법정 소송 감소

그런데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FGC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 과정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로 좁혀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개입이나 사례관리가 소홀에 질 수 있다. 둘째, 중재한다는 것은 곧 아동보호에서 필요한 수퍼비전과 모니터링 과정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회사업가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기반한 해결은 외부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이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가족은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 ③ 법정소송

문제가 심각하면 법원으로 넘겨서 법정에서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 ④ 돌봄(Care)

돌봄은 가족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할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뉴질랜드에서 제공되는 아동 및 청소년 돌봄에는 가정위탁, 시설보호, 입양의 세 유형이 있다. 가정위탁(Foster care)은 한시적 개입 방안이다. 가정위탁은 궁극적으로는 아동을 원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데 목적을

8) 정은주(2008).

9) 정은주(2008).

10) Mike Doolan(1999).

두고 있다. 시설보호(Home for Life)는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 보호제공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뉴질랜드 전역에 8개의 시설이 있다. 친부모는 일반적으로 보조적인(추가적인, additional) 후견인의 지위만을 유지한다. 입양(Adoption)은 양부모가 아동의 법적인 부모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 공개입양을 하여 친부모가 양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다.

## 4. 결어

뉴질랜드는 가족이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아동사례관리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이다. 사례관리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과거에는 주로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외부인의 개입과 계획에 주로 의존하여 관리체계가 결정되었다면, Family Group Conference 도입 이후 가족구성원은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동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 문제해결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입증되었다. 가족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

해 노력할 때 문제해결의 효과는 배가되고,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절약 및 문제해결이 용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C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Family Guided Decision Making으로 명명하였고, 네덜란드는 Own Power Conferences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독인은 청소년들을 위해 Family Group Conferences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FGC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아동문제를 가족성원의 결정에 맡길 때, 국가의 책임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연 가족이 회의를 통해서 아동문제에 제대로 개입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와 친권이 강한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제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고, 주변의 자원소재를 알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건강이 가족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제개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우리나라 아동사례관리제도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고 본다. **본문**